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정치자금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24. 2012고합979,1209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1인

【검 사】윤대진(기소, 공판), 주영환, 이진동, 박성훈, 송창진, 박건욱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광장 외 4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7억 5,750만 원을 추징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1억 4,000만 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